

2024 한권으로 끝내는 사회보험법 정오표

쪽수	구분	상세구분	원내용	수정내용
20	기출지문	02	“생사회안전망”	“평생사회안전망”
30	본문	상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사업 2.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42	기출지문	02	가사서비스업은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이다.	삭제
55	본문	하단 표 5항에 따른 지원금(지원수준)	(훈련비×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장관이 고시하는 유급휴가 기간중에 지급한 임금+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훈련비×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유급휴가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 및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56	본문	상단 표	다.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6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것	삭제
59	본문	3.실업급여의종류 중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직수당	1. 조기재취업수당
61	본문	(3)중복가입자의 경우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사한 경우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65	본문	2번째 tip 3항	1개월	2개월

쪽수	구분	상세구분	원내용	수정내용
67	본문	1번째 tip	<p>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p> <p>3.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p> <p>4.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해당 기간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 합계) ÷ 28</p> <p>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p> <p>※참고:고용노동부 예규</p> <p>1.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소수점이하일때는 올림 2.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때 = 8시간</p>

쪽수	구분	상세구분	원내용	수정내용
68	본문	하단 ㄷ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로 된 날이 제17조(피보험자 본인의 청구에 의한 확인)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그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 다만,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 (고용보험법 제50조 제5항).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2.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69	본문	(5)연장급여 표	개발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72	본문	(2)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 하단 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 이직일 당시 65세이상인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으로 인정된 경우
72	본문	(2)조기재취업수당의 요건 하단 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77	본문	1.육아휴직급여 (1)의의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쪽수	구분	상세구분	원내용	수정내용
78	본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p>육아휴직급여의 특례</p> <p>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p> <p>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p> <p>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00만원</p> <p>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p> <p>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p> <p>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p> <p>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p> <p>나.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월별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p>	<p>육아휴직급여의 특례 (6+6 육아휴직제도)</p> <p>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피보험자인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부모의 육아휴직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겹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부모인 피보험자의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p> <p>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르며, 그 월별 지급액의 하한액은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p> <p>가.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월 200만원</p> <p>나.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p> <p>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p> <p>라.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4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p> <p>마.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5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p> <p>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6개월인 경우: 부모 각각에 대하여 첫 번째 달은 월 200만원, 두 번째 달은 월 250만원, 세 번째 달은 월 300만원, 네 번째 달은 월 350만원, 다섯 번째 달은 월 400만원, 여섯 번째 달은 월 450만원</p> <p>2.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모 각각에 대하여 70만원으로 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를 부모로 본다.</p> <p>③ 제9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p> <p>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p> <p>④ 제1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제9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월별 지급액 전부를 매월 지급한다.</p>

쪽수	구분	상세구분	원내용	수정내용
79	본문	(7)육아휴직급여의 감액	<p>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95조 제3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95조 제3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에서 빼고 지급(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p>	<p>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아휴직급여, 6+6 육아휴직급여 특례로 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인정되는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모 또는 부에 대항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종료일 까지 인정되는 육아휴직급여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6+6 육아휴직급여 특례로 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까지 인정되는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모 또는 부에 대항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인정되는 육아휴직급여 (비례하여 계산한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쪽수	구분	상세구분	원내용	수정내용
84	본문	(4)이중가입의 금지	(4)이중가입의 금지	삭제
93	본문	(3)이중가입의금지	(3)이중가입의 금지	삭제
94	본문	하단 시행령박스	시행령 제104조의14	시행령 제105조의15
95	본문	하단 시행령박스	시행령 제104조의14	시행령 제105조의15
96	본문	하단 시행령박스	시행령 제104조의14	시행령 제105조의15
97	본문	상단 시행령박스	시행령 제104조의14	시행령 제105조의15
98	본문	(2)지급기간	시행령 제104조의15	시행령 제105조의16
106	목차박스		6.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대한특례	6.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108	출제유형		3.특수형태종사자의 범위	3.노무제공자의 범위
109	본문	하단박스 8. 출퇴근	다른 취업장로의 이동	다른 취업장소의 이동
114	본문	tip 박스	다만, 법 제125조 제1항 및 이 영 제125조에 따른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
115	본문	상단	산재보험법 제124조제4항	산재보험법제124조제6항
124	본문	참고 업무상재해판례	업무상재해-회식	삭제
127	본문	업무상질병의범위	4)이상기업	4)이상기업
133	본문	부분휴업급여의지급	2번항목 (산재법제53조제2항)	삭제
133	본문	부분휴업급여표	(평균임금-취업임금) x 90	(평균임금-취업임금) x 80%
133	본문	부분휴업급여표	취업하지 않은 시간- B (단시간취업시)	삭제
139	본문	Tip박스	3.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사람	3. 손자녀로서 25세미만인 사람
139	본문	tip박스 아래 본문	사망,재혼,자녀가 25세가 된 때	사망,재혼,자녀,손자녀가 25세가된 때

쪽수	구분	상세구분	원내용	수정내용
142	본문	상단	12등분으로 분할하여 매년 월별로 지급	삭제
143	본문	(3)재요영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2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5항)
148	본문	2. 구상권행사의 요건	3. 피재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삭제
170	기출지문	01	01 근로기준법 ~ 일할계산한다	삭제
170	본문	tip 박스	2번째 tip박스 산정사유	삭제
170	본문	ㄷ	일할계산에 따른 월별보험료산정	삭제
178	본문	상단	ㄷ 고용보험법제77조의2 ~ 알려야 함.	삭제
196	본문	(1)모든사업주 1번	보험사무를 위임한 ~ 위임할 수 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제45조제2항)	삭제
198	본문	3.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부담	적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각각 2분의 1을 부담한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한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적용촉진장려금 및 피보험자관리대행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2분의 1씩을 부담한다. 다만,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한정된 사무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기금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각각 전부 부담한다.(징수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204	본문	(2)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	건가입자	가입자
201	본문	3.선별급여	3.선별급여	삭제
215	본문	3 - 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250	본문	5. 급여수급전용계좌	(150만원)	(185만원)
256	본문	1.의의 - 1	다만, 가입기간이 ~ 유족연금 지급	삭제

2024 한권으로 끝내는 사회보험법 - 2단 법령집 정오표

쪽수	구분	상세구분	원내용	수정내용
30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p>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8.7.3, 2019.6.25, 2021.6.8][[시행일 2021.7.1]]</p> <p>②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개정 2019.6.25, 2021.6.8] [[시행일 2021.7.1.]]</p>	<p>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27.></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3. 6. 27.></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p>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2021. 6. 8., 2023. 6. 27.></p>